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845
- 발 의 자 : 송경택 의원(찬성자 33명)
- 발 의 일 : 2024년 5월 27일
- 회 부 일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경찰청은 매년 시·도 경찰청별로 각종 범죄의 발생 및 검거 건수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에 관한 통계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반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속하는 각종 생활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경범죄, 교통사고 등) 발생·검거·예방에 관한 통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로 하여금 생활범죄 통계정보를 자치구 별로 공개하고 생활범죄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생활범죄라는 용어의 내용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생활범죄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생활범죄 및 예방 관련 정보와 이에 바탕한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및 공개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라.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6.4. ~ 6.8.)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발생·검거·예방에 관한 통계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생활범죄 예방지도’의 작성 및 공개 방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이라고 함)은 목적, 정의, 생활범죄 예방계획의 수립, 정보의 공개,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공개의 방법, 전담인력,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총 8개의 조문)하고 있음.

〈 제정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조 문 체 계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범죄 예방 및 관련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생활범죄”로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2. 성폭력 및 성매매, 3. 학교폭력, 4. 경범죄, 5. 교통법규 위반 범죄 및 법규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함.
제3조(생활범죄 예방 계획의 수립)	- 시장은 1. 생활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3.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생활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제4조(정보의 공개)	- 시장은 1.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관련 통계, 2. 자치구별 전년 대비 생활범죄 증감 관련 통계, 3.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제1항) - 제1항에 따른 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제2항)
제5조(생활예방지도의 작성)	-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기초자료로 해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서울시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작성하도록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함(제2항).
제6조(공개방법)	-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및 경찰서를 통한 인쇄물 배포를 통한 공개하도록 함.
제7조(전담인력)	- 시장은 생활범죄 예방계획의 수립 및 정보 공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함.
제8조(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생활범죄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서울경찰청, 서울교육청,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2022년 서울시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약 28만건(279,507건)으로 전국범죄 발생건수(143만 4,888건)의 19.5%가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25.8%, 364,534건) 다음으로 높고, 각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한 발생비로 살펴보면, 2022년 전체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3,849.1건)이고, 서울시(2,964.5건)가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으로 범죄의 취약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 1)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였고,
- 5대 강력범죄에서도 강간·강제추행('21년 4,911건 → '22년 5,816건), 절도('21년 33,531건 → '22년 37,579건), 폭력('21년 41,757건 → '22년 46,783건)은 발생 건수가 증가했으며, 범죄 발생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전년에는 무차별적인 흥기 난동 사건(서울 신림역과 경기도 성남 서현역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은 증가하고 있는바,

1) 신상영·조권중, “서울의 범죄발생 특성과 안심도시 추진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61, 서울연구원, 2014년 2월, 3면 참조.

- 본 제정안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사무 중 생활범죄 통계의 공개와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서울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알 권리(Right of know)”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음을 보장하고 의사형성이나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수집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헌재 1991.5.13. 90헌마133).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헌법 국민주권의 원리에 관한 제1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제10조, 언론의 자유에 관한 제21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다만, 알 권리도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제한은 불가능함.

〈 지역별 전체범죄 발생건수 및 구성비 추이(2018년~2022년) 〉

(단위: 건,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발생건수	구성비								
서울	308,997	20.0	309,269	19.7	296,178	19.2	257,969	18.7	279,507	19.5
부산	110,628	7.2	113,138	7.2	113,652	7.4	100,439	7.3	105,057	7.3
대구	72,341	4.7	75,797	4.8	72,373	4.7	67,915	4.9	66,786	4.7
인천	86,391	5.6	90,608	5.8	88,143	5.7	76,584	5.5	82,397	5.7
광주	43,569	2.8	44,274	2.8	43,517	2.8	39,392	2.9	38,900	2.7
대전	45,527	3.0	45,168	2.9	44,623	2.9	39,982	2.9	43,736	3.0
울산	32,764	2.1	32,780	2.1	31,381	2.0	29,085	2.1	27,286	1.9
세종	-	-	6,111	0.4	6,276	0.4	5,937	0.4	6,575	0.5
경기	388,938	25.2	394,276	25.1	394,226	25.6	357,243	25.8	364,534	25.4
강원	45,233	2.9	46,096	2.9	44,571	2.9	39,593	2.9	41,715	2.9
충북	48,315	3.1	48,085	3.1	47,864	3.1	43,397	3.1	44,055	3.1
충남	68,577	4.4	62,666	4.0	61,612	4.0	54,223	3.9	59,196	4.1
전북	47,944	3.1	48,252	3.1	47,446	3.1	43,650	3.2	45,199	3.2
전남	50,993	3.3	52,698	3.4	51,519	3.3	48,380	3.5	48,062	3.3
경북	74,356	4.8	77,449	4.9	73,762	4.8	65,553	4.7	66,928	4.7
경남	90,267	5.9	96,212	6.1	97,998	6.4	87,879	6.4	88,852	6.2
제주	27,427	1.8	26,090	1.7	27,129	1.7	25,515	1.9	26,103	1.8
계	1,542,267	100.0	1,568,968	100.0	1,542,270	100.0	1,382,736	100.0	1,434,888	100.0

* 연도별 합계는 해양경찰청에서 입건한 사건을 제외한 값임.

※ 출처 : 경찰청, 『2022년 범죄통계』, 22면 재인용.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2024년 6월 15일 최종방문)

〈 지역별 전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8년~2022년) 〉

지역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	3,164.1	3,178.8	3,063.3	2,712.8	2,964.5
부산	3,214.6	3,314.1	3,350.6	2,997.8	3,166.5
대구	2,938.6	3,108.9	2,992.7	2,847.1	2,825.5
인천	2,923.9	3,064.2	2,995.2	2,597.5	2,776.8
광주	2,985.5	3,039.8	3,001.0	2,732.5	2,718.3
대전	3,055.6	3,062.4	3,048.3	2,753.1	3,024.5
울산	2,835.2	2,855.4	2,762.4	2,593.2	2,456.7
세종	-	1,794.3	1,763.8	1,596.4	1,714.1
경기	2,974.2	2,978.0	2,936.1	2,633.5	2,682.5
강원	2,931.4	2,990.3	2,888.9	2,573.5	2,714.9
충북	3,021.1	3,005.3	2,989.9	2,716.7	2,762.0
충남	2,810.1	2,950.8	2,904.8	2,558.6	2,788.3
전북	2,610.1	2,652.8	2,629.9	2,442.8	2,554.2
전남	2,708.1	2,820.0	2,782.5	2,639.7	2,644.1
경북	2,777.8	2,905.2	2,794.6	2,495.7	2,573.7
경남	2,675.4	2,861.3	2,993.9	2,651.6	2,708.5
제주	4,110.8	3,888.3	4,021.3	3,770.2	3,849.1

* 지역별 발생비 = (지역별 발생건수*100,000)/해당년도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수

※ 출처 : 경찰청, 『2022년 범죄통계』, 22면 재인용.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2024년 6월 15일 최종방문)

〈 최근 5년간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2018년~2022년) 〉

(단위: 건, %)

연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22	104	98	117	112	5,816	5,344	37,579	20,205	46,783	39,338
2021	124	112	122	116	4,911	4,446	33,531	17,950	41,757	35,388
2020	141	126	138	132	5,763	5,458	38,293	19,705	48,344	41,127
2019	136	128	136	133	6,469	6,007	42,204	21,284	54,723	47,253
2018	143	139	143	151	6,412	6,046	39,175	19,762	56,075	48,389

※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https://data.seoul.go.kr/>, 2024년 6월 15일 최종방문).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고 함) 제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함)이 생활범죄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다만, 본 제정안은 가정폭력, 이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등 생활범죄(이하 “생활범죄”라고 함) 발생·검거·예방에 관한 통계 정보 공개를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적인 경찰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 범죄통계는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경찰청이 동 원표를 기반(집계·분석)으로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음.

「경찰수사규칙」 제86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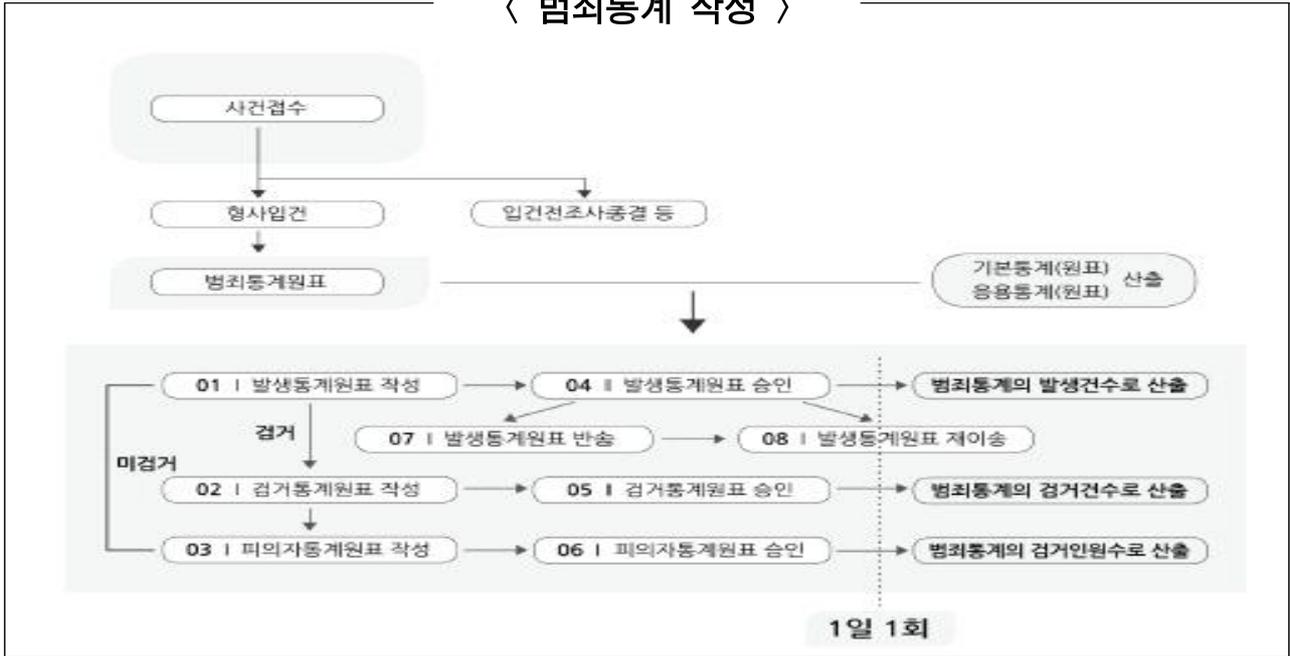
제3조(범죄통계원표의 관리) ①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은 각 경찰관서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각 원표의 자료를 집계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수사 등에 활용한다.

- ※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는 관련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이라 함) 제4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붙임 1> 참조),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및 안전 관리이며,
- ※ 자치경찰사무 중에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경찰법」 제28조 제3항 단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범죄통계 작성 〉



※ 출처 : 경찰청, 『2022년 범죄통계』, 15면 재인용.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정보공개 - 경찰청범죄통계, 2024년 6월 15일 최종방문)

※ 「범죄통계」는 통계청이 승인한 국가통계(승인번호 13204, 승인일자 2007.11.28.)로 경찰청이 「통계법」 제3조에 따른 당연 통계작성기관임.

〈 통계청 승인통계 검색 중 「범죄통계」 〉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명	통계종류	작성 방법	계속 여부	통계분야	승인일자
132004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일반통계	보고	계속	범죄·안전	2007-11-28
155007	해양경찰청	해상조난사고통계	일반통계	보고	계속	범죄·안전	2006-09-11
132002	경찰청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일반통계	보고	계속	범죄·안전	1976-11-30
132001	경찰청	운전면허소지자현황	일반통계	보고	계속	교통·물류	1976-11-30

※ 통계청 승인통계 검색(<https://www.narastat.kr/p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 2024년 6월 15일 방문.

- 따라서, 법령에 위임 규정도 없고(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밖),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할 수 없는 생활범죄 발생·검거에 관한 통계 정보(자치사무 외 사항)를 시장이 공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지방자치법」 제28조)에 반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으로 기대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법령에서 특정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제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가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바가 없음에도 …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 그 구체적 조항이 법령에 위반된 여부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음 (대법원 1995.5.12. 선고 94추28).
- 또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전체 범죄 및 강력(살인, 강간 등), 절도, 폭력, 지능, 풍속범죄의 발생 및 검거 건수를 전국 및 시·도별 경찰청별로 경찰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²⁾ 공개하고 있으나,
 - 본 제정안의 생활범죄 발생·검거 통계는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이라 함)의 협조가 없이는 시장이 공개할 수 없는 통계이며, 서울 경찰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외의 세부 통계 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시장이 생활범죄 통계의 공개하도록 본 제정안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2)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서울경찰청의 비공개 대상정보 중 “범죄통계” 관련 사항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수사과	공통	범죄통계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관한 사항	제3호
형사과	공통	범죄통계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관한 사항	제3호
여성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수사계	범죄통계	성폭력 범죄 발생/검거건수 외 세부 통계에 관한 사항	제3호
	아동 청소년계	아동학대에 관한 업무	아동학대 관련 수기통계(KICS, 112 시스템 통계는 공개 가능)	제3호

※ 출처 : 서울경찰청 홈페이지(<https://www.smpa.go.kr>) -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2024년 6월 15일 방문.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에서는 경찰공무원 현황, 지구대 1개소당 시민수, 112신고 접수·처리 현황, 5대 범죄 발생현황, 5대 범죄 발생장소별 현황, 피의자(연령별, 학력별), 외국인 범죄현황, 실종아동 현황, 가정폭력 발생현황, 소년범죄 발생현황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에서 **서울경찰청에 공문으로 통계제공 요청**을 통하여 제공된 통계를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음(디지털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의 담당주무관 유선통화로 확인).

○ 그리고, 본 제정안은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검거·예방에 관한 통계로 시장이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는 국민 개개인이 생활지역 주변의 위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서비스로,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와 제66조의 10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공개·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지수의 개발·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 서비스” 소개 〉

○ 생활안전정보 서비스(www.safemap.go.kr)

▶ 생활안전지도 : 6대 분야(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 134종의 지도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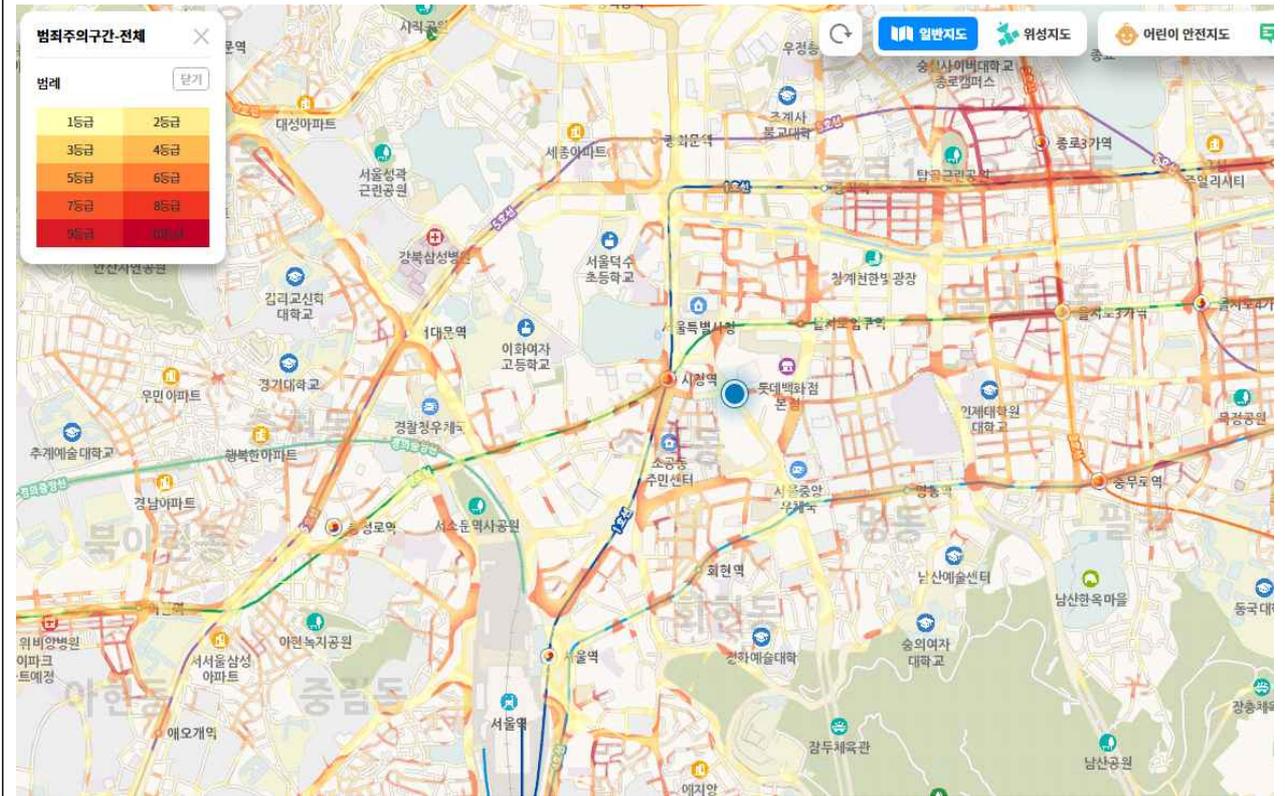
재난	침수흔적도, 하천범람지도, 도시침수지도, 지진발생이력 등	치안	범죄주의구간(성폭력, 강도 등), 여성밤길치안안전, 지하철성범죄위험도
교통	사고 다발지역, 교통돌발정보, 대형교통사고발생정보, 졸음쉼터 등	보건	질병예측정보, 자살발생통계, 식중독발생통계, 가축전염병 등
생활	물놀이 관리지역, 산행안전지도, 해양사고발생이력, 사망재해 등	시설	무더위쉼터, 안전비상벨, 대피소, 비상급수시설, 조위관측정보 등

▶ 지역안전등급 :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등급으로 안내합니다.

▶ 시설물안전정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공개하는 각종 안전점검·진단 결과를 공개합니다.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 - 업무안내 - 안전예방정책실 - 생활안전지도, 2024년 6월 16일 방문.

〈 “생활안전지도” 중 치안-범죄주의구간 서소문동 검색 〉



* 범죄주의구간(전체)는 최근 1년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살인 범죄발생현황을 밀도분석 한 정보임.

※ 생활안전정보(<https://www.safemap.go.kr>) 중 생활안전지도 - 치안 - 범죄주의구간 - 서소문동 검색 결과, 2024년 6월 16일 방문.

-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지도(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는 경찰·보험사·공제조합 등의 교통사고 자료를 수집·통합·분석하여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교통안전법」 제52조에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교통안전법」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소개 〉

○ 주요 서비스

— 교통사고통계 부문

구분		교통사고 통계 및 심층분석 지원
통계 정보	교통여건	시도별 인구 및 자동차등록대수, 운전면허소지자수 등
	교통사고추세	최근 10년단위 주요 항목별 교통사고추세
	교통사고일반	시간대별, 요일별, 월별, 사고유형별, 시도별, 시군구별 등
	사고운전자관련	연령층별, 면허경과년수, 법규위반, 음주정도별 등
	차량관련	차종별, 차량용도별 등
	도로·환경관련	도로종류별, 도로형태별, 도로선형별, 기상상태 등
	부문별	사망사고, 대형사고, 음주사고, 노인사고, 어린이사고 등
	사상자관련	연령층별, 성별, 승차상태별, 보호장구착용여부별 등 OECD 회원국별 사고건수, 사망자
	외국교통사고	인구10만명당 및 차량1만대당 사망자 추세 비교
기타 정보	교통안전지표	전국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도로교통 사고비용 추계와 평가
	통계보고서	교통사고 통계 분석, 교통안전지수,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등

— GIS 기반의 교통사고정보 제공

GIS(지리정보)란?

GIS분석시스템은 특정조건을 사고자료를 지도상에 도표나 그래프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해당 지역별 다양한 교통사고정보 제공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s://taas.koroad.or.kr>) - 고객센터 - TAAS 소개, 2024년 6월 16일 방문.

- 범죄통계 등은 경찰청이 작성·관리하는 통계로, 이를 바탕으로 시장이 “생활범죄예방지도”를 작성·공개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공개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경찰청의 생활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통계의 경우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공공데이터로 제공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도 범죄통계 관리주체는 경찰청이고,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울경찰청은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자치구별 생활범죄 통계의 공개 및 관련 예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동 조례의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 부결 >

- 범죄통계 관리주체는 경찰청이며, 민감 통계의 공개는 법령에 따라 공개 중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도·지역안전지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10)
 -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교통안전지도(교통안전법 제52조·제57조)
-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울경찰청은 공개에 부정적 입장
 - (조직원리 위배) 경찰청 훈령*에 따라 경찰청에서 생산·관리하는 범죄통계에 대한 공개를 시장의 의무로 하는 것은 타 기관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임
 - *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부정적 낙인효과) 해당 지역 범죄통계 공개에 대한 역효과 발생 우려
- 자치구별 생활범죄 통계의 공개 및 관련 예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동 조례의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나. 세부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범죄 예방 및 관련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하고 있음.

※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해석 지침이 되므로, 목적 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여야 함(법제처, 『2022년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년 12월, 54면 참조).

<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범죄 예방 및 관련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안전한 사회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 이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자치구별 생활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발생·검거·예방에 관한 통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범죄예방지도” 작성·공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효과, 즉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범죄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자치구들은 지역 범죄를 줄이기 위해 치안활동 강화와 함께 안전한 지역 환경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하여 범죄예방 활동 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음.
- 안 제2조 정의규정은 본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범죄”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범죄”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법규 위반을 말한다.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2. 성폭력 및 성매매
3. 학교폭력
4. 경범죄
5. 교통법규 위반

- “생활범죄”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조례”라고 함)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으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자치경찰위원회 조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바,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별표 1”을 병기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제 정 안	수 정 의 건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범죄”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법규 위반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2. 성폭력 및 성매매 3. 학교폭력 4. 경범죄 5. 교통법규 위반 	<p>제2조(정의) ----- ----- -----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조례」 별표 1(붙임 1) 참조)에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사무로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청소년 비행 사전방지 활동,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사행행위 지도·단속, 교통사고 신고처리 등도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의 “생활범죄” 정의가 너무 축소되어 정의된 것은 아닌지, 별표 1에 따라 “생활범죄” 정의의 확대 필요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예방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생활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생활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3조(생활범죄 예방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활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3. 생활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안 제3조제2호에서 시장이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이 서울시 전체의 생활범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은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25개 각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구청장(주민 안전에 대한 책무) 또는 31개 경찰관서(경찰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정보의 공개(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은 시장이 ①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관련 통계, ② 자치구별 전년 대비 생활범죄 증감 관련 통계, ③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시설 및 인력 현황, ④ 기타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4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생활범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1.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관련 통계
 2. 자치구별 전년 대비 생활범죄 증감 관련 통계
 3.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시설 및 인력 현황
 4. 기타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정보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범죄의 발생 및 검거 건수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의 주체가 경찰청이며, 범죄통계는 수사사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 수사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할 수 없는 사무로, 소관사무의 원칙(「지방자치법」 제28조)이라는 측면과 정부기관(경찰청)의 비공개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기술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생활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및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을 자치구별로 발생 및 검거 건수 통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간 비교가 가능한 생활범죄 통계 발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지표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바, 25개 자치구의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생활범죄 감소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경찰관서의 성과가 “위험한 자치구”로 분류될 수 있는 맹점도 존재.

-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통계의 공개는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 등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부동산 지가 하락이나 신상정보 유출 등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자치구별 학교폭력 통계의 공개는 범죄율이 높은 자치구에 대한 선입견 조성 우려, 낙인효과, 학교 측은 평판 하락 등을 우려해 폭력 사고를 축소·은폐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자치구별 학교폭력 통계 공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시설 및 인력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범죄 예방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 또한, 현재 서울 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에서는 경찰공무원 현황, 지구대 1개소당 시민수, 자치구(범죄예방 수사용) CCTV 설치현황, 자치구 CCTV 설치 현황, 서울시 안심이 CCTV 연계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음.

4)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기초자료로 하여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서울시 생활범죄예방 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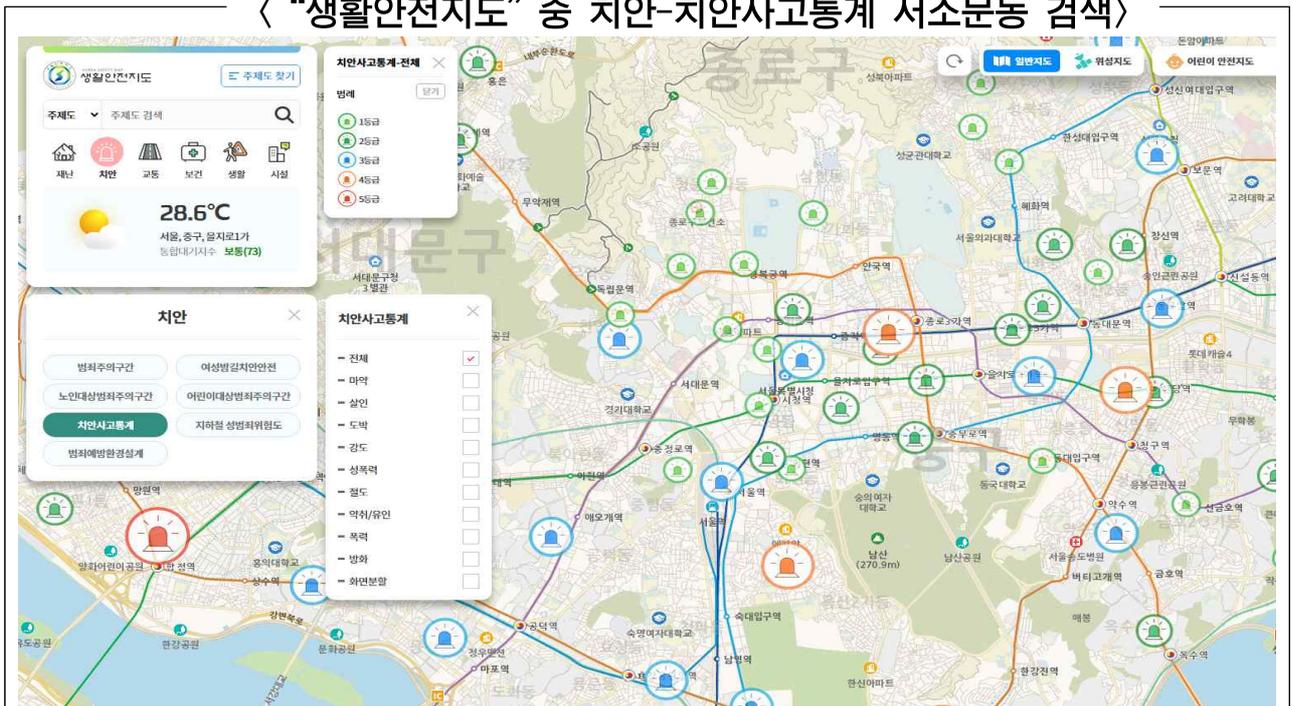
제5조(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기초자료로 하여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서울특별시 생활범죄예방지도(이하 “생활범죄예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범죄예방지도의 작성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범죄 예방지도 작성·공개는 통계자료를 지도에 표출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지도를 통해 자신이 사는 곳, 자신이 일하는 곳 등에서의 범죄 위험도를 알 수 있어 범죄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범죄의 발생 및 검거 건수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의 주체는 경찰청으로, 경찰청의 통계로 “생활범죄예방지도”를 구축·공개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범죄예방지도”의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등 생활범죄의 위험도를 “생활범죄예방지도”로 구축하는 것이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www.safemap.go.kr)” 서비스에서 “생활안전지도” 중 치안을 주제로 ‘범죄주의구간’, ‘여성밤길치안안전’, ‘노인대상범죄주의구간’, ‘어린이대상범죄주의구간’, ‘치안사고통계’,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지도에 표출하고 있고,

〈 “생활안전지도” 중 치안-치안사고통계 서소문동 검색〉



- * 치안사고통계(전체)는 마약, 살인, 도박, 강도, 성폭력, 절도, 약취/유인, 폭력, 방화 등 9대 범죄 발생 건수를 표시한 정보이며, 발생건수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등급화를 적용하여 표시함.
- ※ 생활안전정보(<https://www.safemap.go.kr>) 중 생활안전지도 - 치안 - 치안사고통계 - 서소문동 검색 결과, 2024년 6월 17일 방문.

- “지역안전등급”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를 5등급(1등급일수록 안전)으로 나누어 표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서울시 범죄분야 지수등급을 살펴보면, 1등급은 1개 자치구로 성북구이고, 2등급은 9개 자치구(성동,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양천, 동작, 송파, 강동), 3등급은 6개 자치구(동대문, 중랑, 강북, 강서, 구로, 관악), 4등급은 6개 자치구(용산, 광진, 마포, 금천, 영등포, 서초), 5등급은 3개 자치구(종로, 중구, 강남)이며, 전체 서울시 범죄분야 등급은 4등급으로, 서울시 자치구별로 범죄안전등급에 대하여 이미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정보” 서비스에서 공개하고 있는바, 서울시가 별도로 자치구별 “생활범죄예방지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역안전등급” 중 2023년 서울시 범죄분야 〉



* 2023년 범죄분야 산출지표 및 가중치

구분	산출지표 유형			
	위해지표(가중치)	취약지표(가중치)	경감지표(가중치)	의식지표(가중치)
가중치	50%	10%	20%	20%
산출 분야	범죄	① 인구만명당 집객 시설수(3.04) ② 인구만명당 주점업 업체수(5.26) ③ 스트레스인자율(1.70)	① 인구만명당 경찰 관서수(17.29) ② 인구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2.71)	① 인구만명당 아동 안전지킴이집수 (+3.06) ② 인구만명당 자율방범 대원수(+16.94) (~'23년 6월)

※ 생활안전정보(<https://www.safemap.go.kr>) 중 지역안전등급 - 서울 - 범죄 - 2023년, 2024년 6월 17일 방문.

5) 공개의 방법(안 제6조)

- 안 제6조는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통계 등과 자치구별 생활범죄의 위험도 및 범죄예방 시설 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범죄예방지도”를 ①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를 통한 공고, ②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③ 자치구 및 경찰서를 통한 인쇄물 배포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6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정보 및 제5조에 따른 생활범죄예방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보를 통한 공고
2.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3. 자치구 및 경찰서를 통한 인쇄물 배포

- 안 제6조는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통계 등과 생활범죄예방 지도를 홈페이지 등의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안 제6조제1호 중 “서울시보를 통한 공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보 발행 규칙」 제2조제2항제6호나목에서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바, 자치구별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통계 등이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시보를 통한 공고가 꼭 필요한 사항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6조제1호에서 “서울특별시보”를 “서울시보”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약칭을 사용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바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원래의 용어대로 “서울특별시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음으로, 안 제6조제3호에서 “자치구 및 경찰서를 통한 인쇄물 배포”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범죄 통계와 생활범죄예방지도의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그 공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별도의 인쇄물 배포를 규정하여 얻는 추가적 공개의 효과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6)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안 제8조는 시장은 생활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생활범죄 예방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생활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다만, 본 제정안은 생활범죄 통계 공개 등을 통하여 각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하기 위한 것임에도, 자치구를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자치구를 포함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음.
- 또한, “서울특별시 경찰청”,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공식 명칭은 “서울특별시경찰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 및 별표 1)”,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기관명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생활범죄 예방계획 수립,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경범죄, 교통법규 위반 등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통계와 생활범죄예방지도 공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무이고(「경찰법」 제28조제3항단서), 범죄통계는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작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청이 범죄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있는 사무로, 다른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범죄 통계를 작성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소관사무의 원칙(「지방자치법」 제28조)에 반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본 제정안은 생활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통계 등을 자치구별로 발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치구간 비교 통계 발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통계 지표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 낙인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는바, 자치구별 통계 발표는 25개 자치구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붙임 1 관련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제2조 관련)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건물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및 점검·관리 ②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예방진단 전담 경찰관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장소별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시행
2) 주민참여 방법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협의체와의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 요령 등 홍보활동 ②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활동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 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 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 구조지원 활동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보호기관 등 연계·지원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실종 사전예방활동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킴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등 아동안전보호 인력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등 아동안전 보호기관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 사전방지 활동 ②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및 청소년 참여제도 운영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②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④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

	<p>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활동</p>	<p>① 학교폭력 범죄근절 및 예방활동 ②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③ 학교폭력 예방 전담 경찰관 운영</p>
	<p>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p>	<p>①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p>
	<p>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 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p>	<p>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 폭력·성폭력 등 예방업무</p>
<p>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p>	<p>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p>	<p>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 홍보</p>
	<p>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 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p>	<p>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p>
	<p>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p>	<p>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p>
<p>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p>	<p>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p>	<p>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 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그 밖의 경범, 주취자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등 주민생활 관련 신고 처리</p>
	<p>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p>	<p>① 지하철경찰대 설치·운영(수사 제외) ② 내수면경찰대 설치·운영 ③ 관광경찰대 설치·운영</p>
	<p>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p>	<p>① 유실물 관련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처리 업무</p>

		② 유실물 관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관련 보호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② 교통단속장비 구매·보급·관리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설치·관리·운영 ②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③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② 도로교통 규제 및 교통안전 시설 심의·결정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 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 구성·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지원 및 지도	①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선발·관리 등 지원 ②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 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공사 신고접수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접수 관리 및 안전점검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관리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신청·관리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신고처리 ② 교통안전 및 소통 관련 신고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그 밖에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 업무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관리	①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③ 그 밖에 도로통제 등으로 교통정체 우려시 관련 기관의 사전대책 협의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①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도로법, 교통안전법 등 교통관련 법령상 유관 기관 협의 ②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